

투자, 부동산 부문 옴니버스법 후속 구체화 법령 소개

2021. 3. 25. | 이대호 파트너 변호사

목차

- I. 2021년 투자리스트
- II. 부동산 부문
- III. 전망 및 평가

I. 2021년 투자리스트

2021년 투자리스트 체계 및 개관

▪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(UU 11/2020, UU Cipta Kerja)에 따른 투자법 개정

– 개정 투자법 (UU 25/2007) 제12조 제1항

투자의 금지가 법률에 명시된 것 +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

모든 사업 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개방

– 명시된 투자 금지 분야 (개정 투자법 제12조 제2항)

i) 마약 재배 및 유통 산업,

ii) 모든 형태의 도박 및/또는 카지노 산업

iii)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산업

iv) 산호초의 활용 및 채취 등에 관한 산업

v) 화학무기 제조업

vi)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 물질 관련 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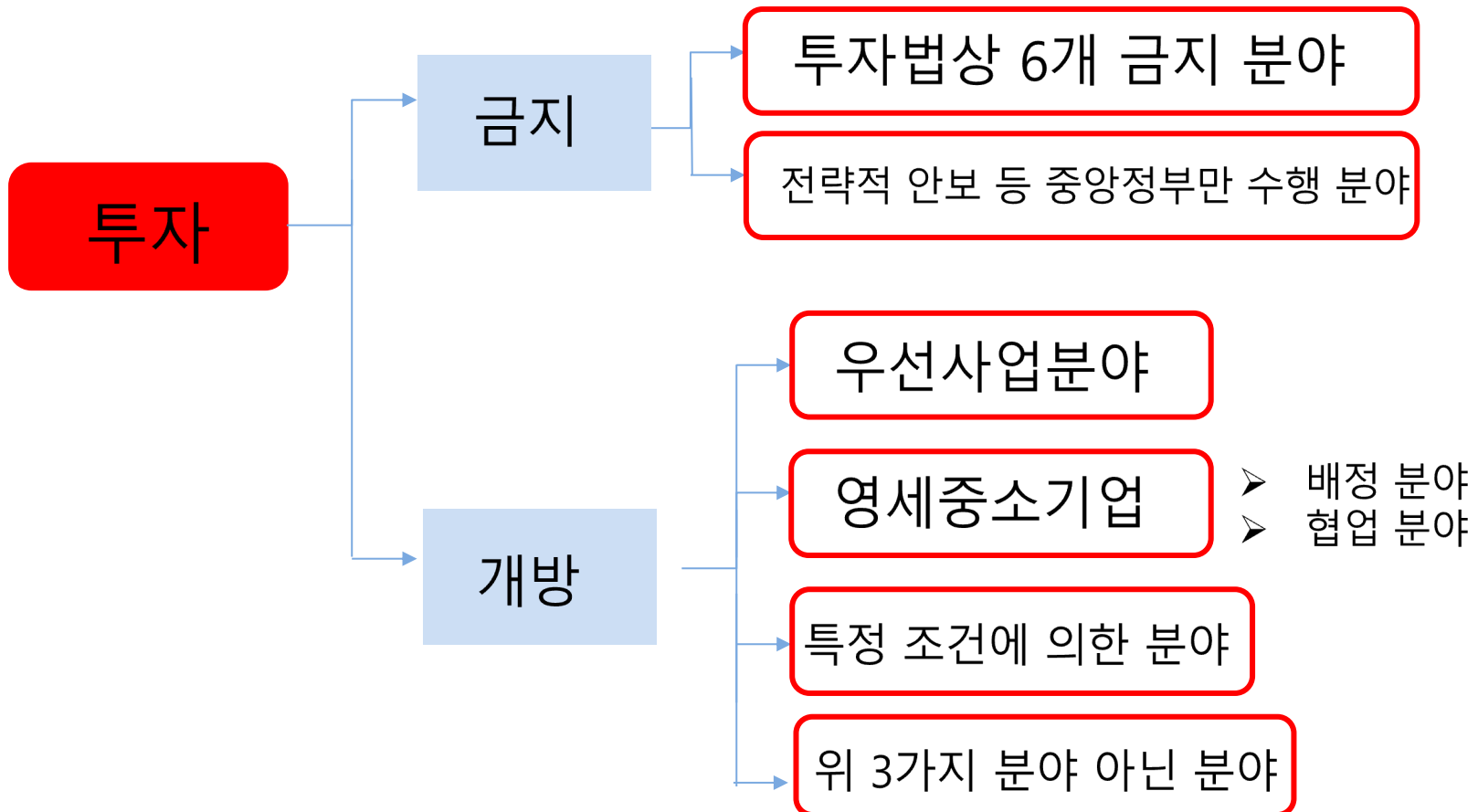
2021년 투자리스트 체계 및 개관

- 새로운 투자리스트에 관한 대통령령(Perpres 10/2021, 공식 명칭: 2021년 제10호 투자사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)
 - 개정 투자법 (UU 25/2007) 제12조 제3항

투자의 요건 및 개방과 제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
 - 2021년 투자리스트의 구조 및 특징
 - i) 15개 조항 , 첨부 1, 첨부 2, 첨부 3
 - ii) **개방 분야 4가지**
 - * 우선사업분야 (첨부 1)
 - * 영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분야 및 그 기업들과 협력 분야 (첨부 2)
 - *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등 특정 조건 사업 분야 (첨부 3)
 - * 위 3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
 - iii) **외자투자, 토지 및 건물의 가치 제외, 100억 루피아 초과의 대기업의 영역에서만 투자 가능** (제7조)
 - iii) **금융 및 은행업 분야 활동, 사업허가 등은 당해 분야의 법령에 따라 규율됨** (제11조)

2021년 투자리스트 체계 및 개관

▪ 투자법 및 2021년 투자리스트 개관



2021년 투자리스트 체계 및 개관

▪ 2021년 투자리스트 및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

투자 금지 명시 분야

내자투자 뿐만 아니라 외자투자 금지

- 개정 전 투자법과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20개 분야
- 개정 투자법 제12조(옴니버스법으로 개정)에 따른 6개 분야

투자

외국자본 제한 및 특정 조건

특정 조건 충족이 되는 경우, 외자투자 포함 모든 투자자 영위 가능

- 일정 조건 내자투자 분야
- 외국자본의 소유 제한 조건 분야
-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
 - ➔ 위 3가지 해당하는 사업 분야 총 46개 (2021년 리스트 첨부 3)
 - ➔ 기존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350개 분야

2021년 투자리스트 체계 및 개관

▪ 2021년 투자리스트 및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

영세중소 기업 배정 분야

영세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에게만 배정된 분야

- PMA 회사의 경우, 인도네시아 영세중소기업법(UU 20/2008) 및 PerBKPM 5/2019 규정에 따라, 영세기업, 소기업, 중기업에 속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기업 해당
→ 외자투자 및 대기업 투자 불가능한 분야
- 2021년 리스트 상 112개 사업 분야 (2021년 리스트 첨부 2)
-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103개 사업 분야

투자

영세중소 기업 협업 분야

대기업 및 외자투자자의 투자 가능

- 영세중소기업과 협업하는 한, 외국자본의 투자 및 대기업도 투자 가능한 분야
- 2021년 리스트상 51개 사업 분야 (2021년 리스트 첨부 2)
-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55개 사업 분야

우선사업분야

▶ 우선사업분야

요건
(Perpres
10/2021
제4조)

- 국가 전략 프로젝트
- 자본 집약 산업; 노동 집약 산업
- 첨단 기술 산업; 선도적 산업
- 수출 지향 산업; 연구 및 혁신 활동 지향 산업
 - 2021년 리스트 첨부 1
 - 총 245개 사업 분야

인센티브
(Perpres
10/2021
제4조)

우선사업분야 투자자 인센티브 제공

i) 금전적 인센티브

- 법인세 감경 및 면제
- 투자 분야 순이익 계상 공제; 매출액 계상 공제
- 관세 면제

ii) 비금전적 인센티브

- 사업허가 편의, 이민국 서비스 편의
- 고용 관련 편의

➔ 인센티브 제공은 관련 법령 규정의 정비가 선행

영세중소기업 분야

▶ 영세중소기업 분야

배정 분야 ▶

- 간단한 기술 활용 분야
- 특별 전수 문화유산 분야
- 특별한 프로세스 필요 분야
- 토지, 건물의 가치 제외, 사업활동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 미만
 - 배정된 분야의 사업활동 하는 영세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규모로 확장되는 경우, 당해 기업은 사업활동 지속 가능. 다만, 다른 영세중소기업과 협업하여야 함

협업 분야 ▶

대기업 및 외자투자를 위하여 개방

- 대기업의 공급망에 들어가도록 권장되는 사업 분야

특정 조건 분야

▶ 외국자본 소유 제한

외국자본 소유 적용의 제한

- 2021년 투자리스트 시행 이전, 특정 분야에서 이미 투자 동의를 취득한 투자
-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국 사이의 별개 약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투자
 - 2021년 투자리스트의 규정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

외국자본 주식소유 변경

PMA회사 동일 사업분야에서 흡수합병, 신설합병, 인수로 인하여 주식 소유가 변경되는 경우, 외국자본 주식 소유 제한 요건 충족 여부

- 흡수합병 – 합병 후 존속회사 사업허가서상의 기준에 따름
- 신설합병 – 신설되는 합병회사의 설립시 적용되는 법령의 제한을 따름
- 인수 – 인수된 회사(피인수회사)의 사업허가상의 기준에 따름

자본시장 예외

이니 증권거래소 통하여 행해지는 포트폴리오 거래에는 외국자본 소유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

주목할 만한 외국인 투자 변경 분야

소매 유통 분야

- **슈퍼마켓(400 m² 이상)**
 - 기존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판매면적 1,200 m² 이하 슈퍼마켓: 폐쇄 분야, 내국자본 100%
 - 2021년 리스트상 별도 제한 규정 없음 → 외국인 주식 소유 100% 개방 해석
- **미니마켓(400 m² 이하)**
 - 기존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폐쇄 분야, 내국자본 100%, 2021년 리스트상 폐쇄
- **백화점(400 m² ~2,000 m²)**
 - 기존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67%의 외국인 주식 소유 한도
 - 2021년 리스트상 별도 제한 규정 없음 → 외국인 주식 소유 100% 개방 해석
 - 다만, PP 29/2021(무역관리에 관한 행정부령)상 쇼핑센터 내에 통합 요건 별도 존재
- **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소매업**
 - 기존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영세중소기업과 협력 분야
 - 2021년 리스트상 영세중소기업과 협력 분야에서 별도 제한 규정 없음 → 외국인 주식 소유 100% 개방 해석

주목할 만한 외국인 투자 변경 분야

도매유통

- 2021년 리스트상 투자 목록에 언급되어 있지 않음 (3가지 이외의 분야)
 - 외국인 주식 소유 100% 개방으로 해석됨
 - 기존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67%의 외국인 주식 소유 한도
 - 규제 당국 추가 확인 필요 : Permen 11/M-DAG/PER/3/2006상, 내국투자자를 현지 소매유통업자 또는 대리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규정 → 옴니버스법 및 2021년 리스트에서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음 → 해석상 모호한 부분 존재

통신업, 휴대폰 사업자, 인터넷 서비스 제공

- 2021년 리스트상 투자 목록에 언급되어 있지 않음 (3가지 이외의 분야)
 - 외국인 주식 소유 100% 개방으로 해석됨
 - 기존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67% 한도
 - 규제 당국 추가 확인 필요

주목할 만한 외국인 투자 변경 분야

공항 서비스, 항만 터미널 서비스

- **2021년 리스트상 투자 목록에 언급되어 있지 않음 (3가지 이외의 분야)**
 - 외국인 주식 소유 100% 개방으로 해석됨
 - 기존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49% 또는 67%의 외국인 주식 소유 한도
 - 옴니버스법 제58조에 따라 항공법 등의 개정과 함께 PERMEN 45/2015 에서 규정한 공항 서비스, 항만 터미널 서비스를 위한 최소 자본 요건 삭제
 - 2021년 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투자는 토지 및 건물 가치 제외하고 100억 루피아 이상 요건만 충족

전력

- **1MW 이상 발전소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**
 - 1MW 미만 발전소 →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국내자본 100% → 2021년 리스트상 영세중소기업 배정 분야: 외국인 투자 불가
 - 1MW 이상 10MW 미만 발전소 →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외국자본 49% 한도 → 2021년 리스트상 전면 개방
 - 10MW 미만 지열 발전소 →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외국자본 67% 한도 → 2021년 리스트상 전면 개방
 - 10MW 초과 발전 →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외국자본 95% 한도(PPP시 협력기간 100%) → 2021년 리스트상 전면 개방

주목할 만한 외국인 투자 변경 분야

건설업 분야

- **외국건설업자는 대규모 건설업에만 참여 가능(인도네시아 건설업법 제23조)**
 - 대규모 건설업의 기준은 고급기술/고위험/높은 공사금액 기준
 - 현지 법인 설립은 반드시 JV
 - 건설업자 대표사무모 형태의 경우, 현지 기업과 반드시 컨소시엄(Kerkasama Operasi)
- **고급기술/고위험/금액 100억 루피아 초과 분야 엔지니어링/감리업**
 - 기존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67%의 외국인 주식 소유 한도
 - 2021년 리스트상 전면 개방으로 해석되나, 건설업법 제32조상 여전히 JV 설립이 요구되므로, 외국투자자의 100% 주식 소유는 불가 해석
- **고급기술/고위험/금액 500억 루피아 초과 분야 건설공사업**
 - 기존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상 67%의 외국인 주식 소유 한도
 - 2021년 리스트상 전면 개방으로 해석되나, 건설업법 제32조상 여전히 JV 설립이 요구되므로, 외국투자자의 100% 주식 소유는 불가 해석

II. 부동산 부문

토지권, 아파트 취득 등 관련 행정부령(PP 18/2021)

▶ 옴니버스법(UU 11/2020) 제136조 내지 제147조)

■ 관리권, 토지권 내용 강화

- 국가토지 관리권은 i) 중앙정부, ii) 지방정부, iii) 토지은행, iv) 국영기업/지방공기업, v) 중앙정부가 지정한 법인에게 부여
- 관리권 토지 위에 경작권(Hak Guna Usaha), 건축권(Hak Guna Bangunan), 사용권(Hak Pakai) 설정
- 제3자는 관리권자(중앙정부, 토지은행 등)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

■ 외국인 등 아파트 취득 가능 원칙 규정

- i) 인도네시아 국적자 개인, ii) 인도네시아 법인, iii) 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
- iv) 인도네시아에 대표사무소를 둔 외국법인, v) 인도네시아 소재 외국 정부기관

■ 구체적인 사항 하위 법령(행정부령, 대통령령) 위임

토지권, 아파트 취득 등 관련 행정부령(PP 18/2021)

▶ PP 18/2021 주요 내용 및 적용 범위

■ 관리권

- 관리권의 주체, 대상, 목적물, 활용, 사용료 결정 방법, 발생(등기)
- 관리권 위의 권리 설정, 관리권에 기반한 토지권에 대한 담보 설정

■ 경작권, 건축권, 사용권

- 경작권, 건축권 및 사용권을 통칭하여 '토지권'
- 기존 PP 40/1996 경작권, 건축권 및 사용권에 관한 행정부령 폐지
- 다만, PP 40/1996 구체적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이 본 행정부령(PP 18/2021)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함

■ 아파트의 취득(외국인 포함)

-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(아파트)에 대한 제약
- 기존 PP 103/2015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주택 소유에 관한 행정부령 폐지
- 기존 PP 103/2015 구체적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이 본 행정부령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

■ 지상 및 지하 공간에 대한 토지권 및 관리권

■ 토지등기제도

- 전자 등기 제도 도입, PERMEN 1/2021 농림부 '전자등기규칙'과 상호보완

토지권, 아파트 취득 등 관련 행정부령(PP 18/2021)

관리권

■ 관리권자가 될 수 있는 자

- 중앙정부, 지방정부, 국유기업 / 지방공기업, 토지은행, 중앙정부가 지정한 법인
- 국유기업/지방공기업 자회사도 포함

■ 관리권 위에 설정되는 권리의 종류

- 경작권, 건축권, 사용권 → 설정시 '토지사용계약'이 작성되어야 함
- 토지사용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(당사자 / 토지 위치, 면적, 경계 / 설정되는 토지권의 종류, 기간, 연장, 갱신 / 토지권 만료 후 관리권 위 건물의 소유 / 사용료 및 지불 절차, 방법 / 손해배상 / 계약의 해제, 취소)

■ 관리권 위에 토지권 설정시 사용료

- 사회적 중요성, 경제적 이익 등 감안
- 구체적 사용료 산정 공식 및 방법 → 향후 장관령으로 구체화 예정

■ 관리권 위 토지권에 대한 이전, 부담의 설정

- 관리권 자체 → 양도, 이전, 저당권 설정 X
- 관리권 위 토지권 → 양도, 이전, 저당권 설정 O
- 관리권자의 추천(동의)가 필수 요건, 토지사용계약 내 규정되어 있어야 함

토지권, 아파트 취득 등 관련 행정부령(PP 18/2021)

경작권(HGU)

- 경작권자가 될 수 있는 자 / 경작권 설정 가능 토지
 - WNI / 인도네시아 법인
 - 국가토지, 관리권 토지
- 경작권 기간
 - 35년(최초), 25년(연장), 35년(갱신) → 총 95년
 - 연장: 권리존속 기간 추가, 기존 권리설정 요건 변경 없음
 - 갱신: 권리존속 기간 만료 또는 연장의 경우 연장된 기간 만료 전, 권리존속 기간 추가
- 경작권 등기 등
 - 설정시 반드시 BPN 등기, 등기된 이후 권리 창설,
 - 증명서 발급(권리에 대한 증명력)
- 경작권 연장, 갱신 / 이전, 부담의 설정 등
 - 관리권 위의 경작권의 경우, 관리권자의 동의 필수
 - 경작권 갱신 → 경작권 기간 만료 후 2년 내 신청
 - 경작권 이전, 양도, 저당권 설정 가능

토지권, 아파트 취득 등 관련 행정부령(PP 18/2021)

건축권(HGB)

- 건축권자가 될 수 있는 자 / 건축권 설정 가능 토지
 - WNI / 인도네시아 법인
 - 국가토지, 관리권 토지, 소유권 토지
- 건축권 기간
 - 30년(최초), 20년(연장), 30년(갱신) → 총 80년
 - 국가토지: 연장기간 까지 총 50년 일괄 부여 가능
 - 관리권 토지: 연장+갱신 총 80년 일괄 부여 가능
- 건축권 등기 등
 - 설정시 반드시 BPN 등기 / 등기된 이후 권리 창설
 - 권리 설정 → 국가토지: 장관 결정 / 관리권 토지: 관리권자 동의 + 장관 결정 / 소유권 토지: 소유권자 합의 + PPAT 증서
- 건축권 연장, 갱신 / 이전, 부담의 설정 등
 - 관리권 위의 건축권의 연장, 갱신 → 관리권자의 동의 필수
 - 소유권 토지 → 소유자와의 합의
 - 건축권 갱신 → 건축권 기간 만료 후 2년 내 신청
 - 건축권 이전, 양도, 저당권 설정 가능

토지권, 아파트 취득 등 관련 행정부령(PP 18/2021)

사용권(HP)

- **사용권의 종류 / 사용권자 / 사용권 설정 가능 토지**
 -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용권,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권
 - WNI / 인도네시아 법인 / 대표부를 둔 외국법인 / 종교 및 사회단체 / 외국인
 -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권: 중앙정부, 지방정부, 외국국가 대표부, 국제기구 대표부
 - 국가토지, 관리권 토지, **소유권 토지(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권 설정 X)**
- **사용권 기간**
 - 30년(최초), 20년(연장), 30년(갱신) → 총 80년
 - 소유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: 30년(최초) + 30년(갱신)
 -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권 → 사용하는 있는 한 계속 부여됨
- **사용권 등기 등**
 - 설정시 반드시 BPN 등기 / 등기된 이후 권리 창설
 - 권리 설정 → 국가토지: 장관 결정 / 관리권 토지: 관리권자 동의 + 장관 결정 / 소유권 토지: 소유권자 합의 + PPAT 증서
- **사용권 연장, 갱신 / 이전, 부담의 설정 등**
 - 사용권 갱신 → 사용권 기간 만료 후 2년 내 신청
 -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용권: 이전, 양도, 저당권 설정 가능 /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권: 이전, 양도, 저당권 설정 X

토지권, 아파트 취득 등 관련 행정부령(PP 18/2021)

아파트 취득

■ 아파트 소유권 취득 가능한 자

- WNI / 인도네시아 법인 / 거주허가 받은 외국인 / 대표부를 둔 외국법인 / 중앙정부 / 지방정부 / 외국국가 대표부, 국제기구 대표부

■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시 제약 사항

- 최소 가격 / 토지 면적 / 아파트의 유닛의 수 / 주택 공급 사정 등

➔ 위와 같은 제약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 장관령에 위임(PP 18/2021 제 73조)

- 다만, 기존 PP 103/2015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주택 소유에 관한 행정부령이 폐지되고 효력을 상실하였으나, PP 103/2015의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이 본 행정부령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

➔ 신규 장관령 제정시까지, 기존 PERMEN 13/2016 에서 정하여 둔 각 지역별 취득 최소가액은 현재까지도 유효함

➔ 예) 자카르타 단독주택 100억 루피아, 아파트 50억 루피아

■ 신축 후 최초로 거래되는 아파트에만 한정 여부 ??

- 기존 PP 103/2015 및 PERMEN 13/2016 모두에서 '신축 후 최초로 거래되는 아파트만이 외국인 소유권 취득 가능한 것으로 규정

• 옴니버스법 및 본 행정부령에서 별도로 '신축 후 최초로 거래되는 아파트만으로 국한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, 본 행정부령에 주택 공급 사정을 제약 요건으로 규정 → 장관령 발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 있음

토지권, 아파트 취득 등 관련 행정부령(PP 18/2021)

지상 및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

■ 지상 공간 및 지하공간

- 지상 공간: 토지의 점유, 소유, 사용 및 활용과 별개로 특정한 목적의 점유, 소유, 사용 및 활용을 위한 토지 위의 공간
- 지하 공간: 토지의 점유, 소유, 사용 및 활용과 별개로 특정한 목적의 점유, 소유, 사용 및 활용을 위한 토지 아래의 공간
- 지하 공간은 i) 얇은 지하 공간, ii) 깊은 지하 공간으로 구분
- 지상 공간 및 지하 공간에 관리권, 건축권, 사용권이 설정될 수 있음

■ 얇은 지하 공간 / 깊은 지하 공간

- 얇은 지하 공간: 지표에서 지하 30m 까지의 공간
- 얇은 지하 공간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에 종속되는 공간
- 깊은 지하 공간은 토지권자로부터 구조적, 기능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권리 객체

■ 추가적인 장관령 마련 예정

- 지상 공간 또는 지하 공간에 대한 관리권, 건축권 및 사용권의 주체, 객체, 기간, 권리의 발생, 연장, 갱신, 신청 조건과 절차, 등록, 의무, 금지 및 권리, 부담, 이전, 포기 및 변경, 그리고 소멸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장관령에 위임

III. 전망 및 평가

투자 및 부동산 부문 전망 및 평가

▶ 투자

일부 현지 언론들에서 'Positive 리스트' 라고 부를 만큼 긍정적

- 특정 조건 개방 업종 : 기존 350개 vs 2021년 리스트 46개
- 외국자본 소유 제한 업종은 29개로만 명시됨 → 대폭 축소
- 우선사업분야(첨부 1), 영세중소기업분야(첨부 2), 특정조건분야(첨부 3)이 아닌 분야의 개방 명시 → 이러한 분야 외국자본 소유 제한 없음(해석)
- 도매유통, 인터넷 서비스, 공항서비스, 항만서비스, 전력, 건설업 분야 등 외국자본 제한 확대 → 관심

여전히 일부 부문 개방 확대 효과 미약

- 금융 및 은행업 분야 당해 분야 법령에 의하여 별도 규율
- 광업 분야의 경우, 2021년 리스트에 별도 명시 없어서 이론상 100% 외국자본에 개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, 기존 광업법(UU 4/2009) 및 행정부령(PP 23/20202)에 의하여 PMA회사는 상업생산 개시 후 10년 내 점진적으로 국내 자본이 51% 주식 보유하도록 주식 해소
- 알코올 산업 → 2021년 리스트상 발리, 술라웨시 등 일부 지역에서 개방된 것으로 규정 → 이슬람 단체의 반발로 개방 철회하기로 함(2021.3. 현지 뉴스)

투자 및 부동산 부문 전망 및 평가

▶ 부동산

국가토지에 대한 관리권 강화 및 구체화

- 관리권자의 범위 구체화
- 관리권 위 토지권 설정시 절차와 요건 명시
- 관리권 위 토지권 설정시 사용료 산정 방법 및 공식 법제화
- 관리권 위 토지권의 이전, 양도, 담보권 설정시 요건 명시

외국인 아파트 취득 관련 개방 미약

-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시 제약 사항 존재(금액, 면적, 보유 아파트 수)
- 신축 후 최초의 거래되는 아파트에 한정될 것인지 여부 등 불분명분
- 추가적인 장관령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필요

DISCLAIMER



“ 이 자료는 인도네시아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소개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권한있는 법률적인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 ”

감사합니다



이대호 파트너변호사

T. +62 877 8392 4470 / +82 10 5622 0238

E. dholee@shinkim.com

인도네시아 사무소

The Plaza Office Tower 29th Floor, Jl. M. H. Thamrin, Kav.28-30, Jakarta 10350, Indonesia

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(우)03155

TEL: 02 316 4114 | FAX: 02 756 6226

www.shinkim.com

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세종 및 작성 변호사에게 속하므로, 사전 허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, 복제, 배포,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 본 자료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 세종 또는 본 자료에 기재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